

定 款

2023년 3월 30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정관

목 차

전 문

전 문	1
-----------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2
제 2 조 (목적)	2
제 3 조 (본사 및 지사)	3
제 4 조 (공고방법)	4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제 6 조 (일주의 금액)	4
제 7 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4
제 8 조 (주식의 종류)	4
제 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5
제 8조의3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6
제 8조의4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6
제 9 조 (신주인수권)	7
제 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8
제 9조의3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0
제 10 조	10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0
제 12 조	10
제 13 조 (기준일)	10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사채의 발행)	11
제 14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11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2
제 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3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4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 (구분 및 소집시기)	14
제 18 조 (소집권자)	14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4
제 20 조 (소집지)	15
제 21 조 (의장)	15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5
제 23 조 (의결권)	15
제 24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5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6
제 26 조 (의결사항)	16
제 26조의2	17
제 27 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17
제 27조의2 (집중투표)	17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17

제 5 장 이사, 이사회와 감사

제 29 조 (이사)	18
제 29 조의2 (이사의 자격)	19
제 30 조 (이사의 결원)	19
제 31 조 (이사의 직무)	20
제 32 조 (이사회 구성)	20
제 33 조 (이사회 소집)	21
제 34 조 (이사회 의결)	21
제 35 조 (의결사항)	21
제 35 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22
제 36 조 (이사회 의사록)	22
제 37 조	23
제 37조의2	23
제 37조의3	23
제 37조의4 (감사)	23
제 38 조 (감사의 직무)	23
제 39 조	24
제 40 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24

제 6 장

제 41 조	25
제 42 조	25
제 42조의2 (안전보건계획)	25

제 7 장 계 산

제 43 조 (사업년도)	25
제 44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	25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26
제 46 조 (이익배당)	27
제 46 조의2 (중간배당)	27

제 8 장 보 칙

제 47 조 (규 정)	28
제 48 조 (통 지)	28

제 9 장 설립에 관련된 사항

제 49 조 (회사의 설립비용)	28
제 50 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29
제 51 조 (설립전회사의 대표)	29

부 칙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정관

제 정	1997. 8. 30.	1차개정	1997. 9. 23.
2차개정	1998. 3. 30.	3차개정	1998. 8. 28.
4차개정	1999. 2. 26.	5차개정	1999. 10. 1.
6차개정	2000. 3. 17.	7차개정	2001. 3. 23.
8차개정	2002. 3. 29.	9차개정	2003. 10. 21.
10차개정	2004. 3. 26.	11차개정	2004. 12. 16.
12차개정	2005. 3. 25.	13차개정	2006. 3. 24.
14차개정	2008. 3. 28.	15차개정	2008. 9. 22.
16차개정	2009. 3. 13.	17차개정	2010. 3. 12.
18차개정	2012. 3. 23.	19차개정	2014. 3. 21.
20차개정	2017. 6. 20.	21차개정	2019. 3. 27.
22차개정	2020. 3. 31.	23차개정	2020. 5. 6.
24차개정	2020. 6. 15.	25차개정	2021. 3. 26.
26차개정	2023. 3. 30.		

전 문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으로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을 추구하고, 구성원은 주주의 장기적 가치와 이해관계자의 행복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한다. 이를 회사의 경영철학에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인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며,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6. 15.>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K Broadband Co., Ltd. 라 표기한다. <개정 1998. 8. 28., 2004. 12. 16., 2008. 9. 22.>

제2조 (목적)

① 이 회사는 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며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컨버전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26., 2009. 3. 13.>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 3. 13., 2010. 3. 12., 2014. 3. 21., 2019. 3. 27, 2020. 5. 6., 2021. 3. 26.>

1. 정보통신사업
2. 방송 및 뉴미디어사업
3. 콘텐츠사업
4. 통신판매업

5. 광고업
6. 전자금융업
7. 단말기매매 및 임대업
8. 동산 및 부동산 임대업
9. 정보통신공사업 및 임대업
10. 상품권의 발행, 관리 및 유통판매업
11. 전기공사업 <신설 2014. 3. 21.>
12.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업 <신설 2014. 3. 21.>
13. 기계경비업 <신설 2019. 3. 27.>
14. 제1호 내지 제7호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15. 제1호 내지 제7호 관련 해외사업 및 수출입업
16. 제1호 내지 제7호 관련 제조 및 유통업
17. 제1호 내지 제7호 관련 대행 및 위수탁업
18. 관계통신법령에서 수행토록 규정된 사업
19. 종합유선방송사업
20. 전송망사업
21. 기간통신사업
22.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문화, 관광사업
23. 문화사업, 공익사업 및 정부공시사항 전달
24. 전시, 세미나 컨벤션사업
25. 독립영상제작사업
26. 경영자문업
27. 공연, 전시, 행사기획 및 대행업
28. 서버, 가전제품, 사무기기 관련 판매 및 임대업
29.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통합관리업
30.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
31.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
32. 부가통신사업 <신설 2021. 3. 26>
3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신설 2021. 3. 26>
34. 통신과금서비스 사업 <신설 2021. 3. 26>
35.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설 2021. 3. 26>
36. 위 각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대되는 제사업

③ 이 회사는 제2항 각호의 사업이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3조 (본사 및 지사)

① 이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bbroadban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한다. <개정 1999. 10. 1., 2006. 3. 24., 2014. 3. 21.>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칠억(700,000,000)주로 한다. <개정 1997. 9. 23., 2003. 10. 21.>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억이천팔만이천이백주로 한다. <개정 1997. 9. 23.>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 기명식 우선주식, 기명식 전환주식, 기명식 상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01. 3. 23., 2006. 3. 24., 2019. 3. 27.>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2006. 3. 24.>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20. 5. 6.>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존속기간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시에 정하며 그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2006. 3. 24.>

-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
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
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4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2006. 3. 24.>

- 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가 의
무적으로 상환하거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
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
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
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개정 2019. 3. 27.>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별도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⑥ 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그 상환주식을 제8조의3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 10. 21.>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개정 1998. 8. 28.>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8. 28.>

1.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9. 3. 13.>
2.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받

- 행하는 경우 <개정 2009. 3. 13.>
3.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개정 1998. 8. 28., 2009. 3. 13.>
 4.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 3. 13.>
 5. <삭제 1998. 3. 30.>
 6.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1999. 2. 26., 2009. 3. 13.>
 7.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절차를 밟은 외국인 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 금융/투자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1999. 10. 1., 2009. 3. 13.>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04. 3. 26., 개정 2006. 3. 24.>

④ <삭제 2003. 10. 21.>

⑤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조문명칭 변경 2000. 3. 17.>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사망, 강제퇴임이나 퇴직 또는 귀책사유없는 기타 비자발적 퇴임이나 퇴직사유(정년을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이후 당해 임직원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7., 2003. 10. 21., 2009. 3. 13., 2012. 3. 23., 2020. 5. 6.>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0. 3. 17., 2003. 10. 21.>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개정 2009. 3. 13., 2020. 5. 6.>
2.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개정 2009. 3. 13., 2020. 5. 6.>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개정 2000. 3. 17., 2009. 3. 13., 2020. 5. 6.>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개정 2000. 3. 17.>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 3. 17.>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관련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7., 2003. 10. 21., 2009. 3. 13.>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7.>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개정 2000. 3. 17.>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

정 2000. 3. 17.>

제9조의 3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2019. 3. 27.>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삭제 2006. 3. 24.>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조문명칭 변경 1998. 3. 30.>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신설 1998. 3. 30.>
- ②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및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계약 등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신설 1998. 3. 30.>
- ③ 회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
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
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개정 1998. 8. 28., 2019. 3.
27.>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8. 8. 28.,
2003. 10. 21., 2010. 3. 12.>
- ⑤ ~ ⑦ <삭제 1998. 8. 28.>

제12조 <삭제 2019. 3. 27.>

제13조 (기준일) <조문명칭 변경 2023. 3. 30.>

① <삭제 2023. 3. 30.>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개정 2003. 10. 21.>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④ <삭제 2023. 3. 30.>

제 3 장 사 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신설 2012. 3. 23.>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본조 이동 2012. 3. 23.>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21.>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투자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6. 3. 24.>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 3. 13.>
6.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한 일반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총수는 미발행주식총수 범위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03. 10. 21.>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삭제 1998. 8. 28.>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에 따라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21.>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6. 3. 24.>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 3. 13.>
6.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한 일반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총수는 미발행주식총수 범위내이어야 한다.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03. 10. 21.>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삭제 1998. 8. 28.>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2019. 3. 27.>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30.>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개정 2019. 3. 27.>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17조 (구분 및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9. 3. 27.>

제18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개정 2003. 10. 21.>
- ②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 10. 21.>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21.>

② <삭제 2020. 5. 6.>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 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 10. 21.>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21.>

② 전항의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도 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21.>

제26조 (의결사항)

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임과 해임 <개정 2000. 3. 17.>
2. 이사의 보수지급한도 <개정 2000. 3. 17.>
3.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회사의 합병 및 해산
6. 기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② 해외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거래되도록 한 경우 그 범위내에서 회사는 관계 감독기관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9. 10. 1.>

제26조의2 <삭제 2003. 10. 21.>

제27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의 해임 <개정 2000. 3. 17.>
3. 자본의 감소
4. 회사의 합병 및 해산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6.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신설 2003. 10. 21.>
7. <삭제 2004. 3. 26.>
8. 기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00. 3. 17.>

③ <삭제 1998. 8. 28.>

제27조의2 (집중투표)

이 회사의 이사선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10. 1.>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 및 지사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와 감사

<장명칭 변경 2000. 3. 17., 2020. 3. 31>

제29조 (이사)

① 이 회사의 이사의 수는 총 15인 이내로 한다. <개정 1999. 10. 1., 2002. 3. 29., 2003. 10. 21., 2005. 3. 25., 2006. 3. 24.>

② <삭제 2020. 5. 6.>

③ <삭제 2003. 10. 21.>

④ <삭제 2005. 3. 25.>

⑤ <삭제 2020. 5. 6.>

⑥ <삭제 2003. 10. 21.>

⑦ <삭제 2003. 10. 21.>

⑧ <삭제 2001. 3. 23.>

⑨ <삭제 2001. 3. 23.>

⑩ <삭제 2020. 5. 6.>

⑪ <삭제 1999. 10. 1.>

⑫ <삭제 1999. 10. 1.>

⑬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최되는 제3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에 만료된다. <개정 2009. 3. 13.>

⑭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29조의2 (이사의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신설 2005. 3. 25.> <개정 2008. 3. 28.>

1. 이 회사 정관 제2조의 목적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회사(이하 ‘경쟁회사’라 한다)를 지배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단, 회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로 편입될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인 회사 및 그 계열회사는 경쟁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8. 3. 28., 2020. 3. 31.>
2. 경쟁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개정 2008. 3. 28.>
3. 경쟁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인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개정 2008. 3. 28.>

② <삭제 2020. 3. 31.>

제30조 (이사의 결원)

①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후임이사를 선임하여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1.>

②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원으로 본다.

1. 사망한 때
2. 파산이 선고된 때
3.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때 <개정 2023. 3. 30.>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

제31조 (이사의 직무)

① 이 회사는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각자 또는 공동으로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을 총괄한다. <개정 2001. 3. 23., 2003. 10. 21., 2006. 3. 24.>

②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 3. 23., 2003. 10. 21., 2006. 3. 24., 2020. 3. 31.>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7., 2020. 3. 31.>

제32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삭제 1999. 10. 1.>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0. 1., 2003. 10. 21.>

제33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 10. 21., 2020. 5. 6.>

② 대표이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그 소집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7., 2003. 10. 21., 2006. 3. 24.>

제34조 (이사의 의결)

①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사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3. 17., 2020. 3. 31.>

② <삭제 1999. 10. 1.>

③ 이사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삭제 2003. 10. 21.>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 5. 6.>
5.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6.>

6. 장기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각 계획. <개정 2003. 10. 21., 2020. 5. 6.>
7.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개정 2001. 3. 23., 2003. 10. 21., 2006. 3. 24.>
8.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9.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0. 5. 6.>
11. 이사의 경업허용
12. <삭제 1998. 8. 28.>
13. <삭제 2020. 5. 6.>
14. 상법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신설 2000. 3. 17.>
- 14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신설 2020. 6. 15.>
15. <삭제 2020. 5. 6.>
16. 상법 제393조 제1항을 포함하여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2020. 5. 6.>

제35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신설 2000. 3. 17.>

이사회는 회사의 규정에 의거 특화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내에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7.>
- ②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0. 3. 17.>

③ 회사는 제2항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0. 3. 17.>

제37조 <삭제 2000. 3. 17.>

제37조의2 <삭제 2020. 3. 31.>

제37조의3 <삭제 2020. 3. 31.>

제37조의 4 (감사) <신설 2020. 3. 31.>

① 이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0.>

③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조항번호 개정 2023. 3. 30.>

④ 감사 중 결원(제1항의 최저 원수를 결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선임한다. <조항번호 개정 2023. 3. 30.>

제38조 (감사의 직무) <조문명칭 변경 2000. 3. 17., 2020. 3. 31.>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00. 3. 17., 2020. 3. 31.>

②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7.>

③ <삭제 2000. 3. 17.>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7., 2020. 3. 31.>

⑤ 감사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을 요청한다. <신설 2019. 3. 27.>
<개정 2020. 3. 31.>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⑦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제39조 <삭제 2020. 3. 31.>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문명칭 변경 2000. 3. 17., 2020. 3. 31.>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0. 3. 17., 2003. 10. 21., 2020. 3. 31.>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 3. 17., 2020. 3. 31.>

제 6 장 사업계획 <삭제 2003. 10. 21.>

제41조 <삭제 2003. 10. 21.>

제42조 <삭제 2003. 10. 21.>

제42조의2 (안전보건계획)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6. 15.>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제 7 장 계 산

제43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7., 2003. 10. 21., 2012. 3. 23., 2020. 3. 31.>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

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012. 3. 23.>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신설 2012. 3. 23.>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7. , 2003. 10. 21. , 본항 이동 2012. 3. 23.>
<개정 2020. 3. 31.>

④ 회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본항 이동 2012. 3. 23.>

⑤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항 이동 2012. 3. 23.>

⑥ 회사가 외국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거래되도록 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회사는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와 관련된 정보의 준비, 제출, 제공에 대한 관계 감독기관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0. 1., 본항 이동 2012. 3. 23.>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의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6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
- ⑤ 이 회사는 시내전화 사업개시후 당해사업년도의 이월결손금이 전액 보전되는 사업년도부터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의2 (중간배당) <신설 2023. 3. 30.>

-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 및 제4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의해 이 회사가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이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7조 (규 정) <개정 2020. 5. 6.>

① 이 회사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에 의한다.
<신설 2020. 5. 6.>

제48조 (통 지)

본 정관에 따른 모든 통지, 요구, 요청, 동의 또는 기타 연락사항은 서면 (인편전달, 항공등기우편, 전자문서, 팩시밀리 등 포함)으로 행한다.
<개정 2003. 10. 21.>

제 9 장 설립에 관련된 사항

제49조 (회사의 설립비용)

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시내전화사업인가에 필요한 컨소시엄구성을 위한 사업설명회, 기타 각종광고, 사업계획서 작성, 각종 등록 내지 인허 등 회사설립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총액 350억원 한도내에서 회사가 부담한다.

제50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이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제51조 (설립전회사의 대표)

발기인대표는 시내전화사업허가를 위한 신청의 준비와 제출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한다.

부 칙 <1997. 8. 3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임이사추천권에 대한 경과규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비상임이사 추천권이 유지될 수 없거나, 이사회에 버금가는 위치를 주주협의회가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비상임이사추천권은 상임이사추천권으로 대체된다.

제3조 <삭제 1998. 8. 28.>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부 칙 <1997. 9. 2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3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8. 8. 28.>

부 칙 <1998. 8. 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0.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제29조제2항의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재임중인 비상임이사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29조제9항의 대표이사 사장의 선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재임중인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2000. 3. 1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2001. 3. 2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2002년도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독립비상임이사로 재직중이었던 이사 중 2002년도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29조 제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비상임이사 또는 독립비
상임이사로서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2003. 10. 2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21일자 임시주주총회의 액면미달 신
주발행 관련 결의에 따라 신주에 대한 주금 납입이 완료되는 즉시 발효한다.

부 칙 <2004. 3.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1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전에 선임된 이사에 대해서도 적
용된다.

부 칙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2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의 3,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 2 및 제 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3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가 2019. 4. 26.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따른 합병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는 이 회사가 2019. 4. 26. 체결한 합병계약서(그에 대한 변경 계약 포함)에 따라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 칙 <2020. 6.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2조의2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3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